

선도기술탐색형 국토교통 국제공동연구 신규과제 설명회 Q&A

□ 공고안내서 Q&A 및 사전 질문 답변

[Q1] 해외기관이 컨소시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? 해외기관의 역할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?

[A1] 해외기관은 기관 유형의 정의상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분류되며(공고 안내서 p.3 용어 정의 참조), **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글로벌 선도기술을 공동 개발**합니다(해당 기술의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).

해외기관은 **컨소시엄에 반드시 포함**되어야 하고, 해외기관의 요건(해외기관의 타당성·신뢰성, 구체적 협력방안 등)은 선정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합니다. 신청기관은 **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체결한 사업참여의향서 (Letter of Intent, LOI)나 양해각서(Memorandum of Understanding, MOU) 등을 반드시 제출**해야 합니다.

해외기관이 **별도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**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**참여방식은 연구개발기관외기관으로 참여**합니다.

[Q2] 본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했던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제출한 기술이 공고에 반영되거나 선정평가지 별도 가점이 있는지?

[A2] 사전 수요조사는 국토교통기술의 글로벌 선진기술 도입 필요 여부, 해외 기관 협력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, 접수된 기술이 **공고에 반영되거나 선정평가지 별도 가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**

[Q3]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와 관련하여 본 과제가 4책 6공에 해당하는지?

[A3] 본 공고 과제는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가 아니어서 4책 6공에 해당하지 않고 **3책 5공을 적용**합니다.

[Q4]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항목으로 편성 가능한지?

[A4] 본 공고 과제는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가

아니어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아닌 **연구활동비나 위탁연구개발비**에 해외기관의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.

[Q5] 국제 R&D 과제 컨소시엄 형성을 위한 해외 국가 매칭 및 네트워킹 이벤트가 있나요?

[A5] 진흥원이 주관하는 별도의 국가매칭 및 네트워킹 행사는 없습니다.

[Q6] 해외기관의 수는 상관이 없나요?

[A6] 선도기술탐색형 과제의 경우 해외협력기관 수의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. 과제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구성해주시면 됩니다.

[Q7] 수요처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해외기관을 수요처로 구성해도 되나요?

[A7] 해외기관이 수요기관(혹은 수요처)에서 참여해도 됩니다.

[Q8] 수요기관(공사/공단)이 필수적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나요? 또는 연구개발기간 외 기관으로 참여가 되어야 하나요?

[A8] 본 공고에서 수요기관 참여는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국내 기관이 참여할 경우 참여성격에 맞게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외기관 등으로 참여형태를 정하시면 됩니다.

[Q9] 해외기관과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된 공모안내서가 있나요?

[A9] 영문 공모안내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
[Q10] 본 사업(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)의 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(다자협력형, 한-영 양자, 한-캐나다 양자 등)로 수행중인데 이번 공고에 신청이 가능한가요?

[A10] **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**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수행하고 계시는 경우 이번 공고에는 **신청이 불가**합니다.

[Q11] 신진연구자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
[A11] 제안하시는 기술이 **동일한 기술이 아닌 경우**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□ 설명회 질의 답변

[Q1] 위탁으로 참여하는 해외기관에 할당할 수 있는 연구비 예산의 상한/하한이 있는지요?

[A1]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로 편성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의 40%까지 편성 가능합니다. 최소 기준은 없으며, 해외기관이 연구개발비 없이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외기관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.

[Q2] 연구개발계획서와 요약문의 분야 선택과 요약문의 연구개발과제 특성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?

[A2] 연구개발계획서와 요약문의 분야는 아래의 3개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.

- 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: 최대 3개까지 선택, 비중 작성
- ② 국토교통 분야 : 8개(주관식 포함) 중 가장 부합하는 분야 1개 선택
- ③ 국토교통 R&D 핵심아젠다 : 7개 중 가장 부합하는 주제 1개 선택

요약문의 연구개발과제 특성은 선택하신 국토교통 R&D 핵심아젠다 중 19개 세부주제 중 하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(아래 그림 참조).

< 세부주제(19개 세부주제(빨간색 네모표시) 중 1개를 선택하여 요약문 연구개발과제 특성란에 작성) >

아젠다	세부주제	세부 추진방안(예시)	아젠다	세부주제	세부 추진방안(예시)
첨단 모빌리티	1. 모빌리티 기술혁신	· (신시장 대응) 모빌리티 무인화/디지털화 등 미래 신시장 대응 기술개발 고도화 · (융합 플랫폼) 인프라-모빌리티 연계를 위한 H/W, S/W 등 통합운영관리 플랫폼	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	1. 친환경 교통시스템	· 탄소중립 모빌리티 시스템 전력공급, 에너지 효율향상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· (융합 모빌리티 인프라) 모빌리티 통합운영관리 등 융합인프라 구축 중심 투자
	2.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	· 인프라 조성 UAM 이착륙장, 하이퍼루브 승하차 역사 등 인프라 구축 · (모빌리티 안전관리) 데이터 활용, 안전 인프라 등 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투자 · (실용-상용화) 실용 인프라/기술/인력/인프라 등 모빌리티 상용화 활용체계 구축		2. 안전성 평가인증체계	· (안전성 확보) 친환경 모빌리티 운행부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인증체계 구축 · (안전성 향상) 교통·물류 안전체계 기반의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
	3. 자율협력주행 활성화	· (교통체계 전환) 자율협력주행 기반 운행/운송시스템 및 제도·규제 개선 · (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조성) 테스트베드, 서비스 플랫폼 등 실증·리빙 투자		3. 국토교통 안전성 강화	· (안전·예측·예방) 도시·주거·관광·자연·재난 예측·예방 모니터링, 경보시스템 등 · (사회 안전인프라) 전세기 등 사회안전·방치, 산악대응을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 · (통합 안전관리플랫폼) 방범·방재·교통 등 정보데이터 연계 국토교통 통합안전관리
	4. 미래 수소 생태계 확산	· (핵심 원천기술) 수소 공급시스템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중심 투자 · (미래 수소도시) 수소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미래 수소도시 주거모델 실증 추진	안전/편리한 생활환경 조성	4. 스마트 인프라	· (생산·서비스) 주거환경 성능개선, 열원, 서비스 플랫폼 등 주거·여건 서비스 개선 · (생활 서비스) 공간정보 중심 데이터 활용 서비스, 자동차·디지털 등 생활편의성 향상 · (교통·물류 서비스) 물류혁신,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대국민 교통물류/이동 편의 개선 강화
수소	5. 수소 생산·저장·운송	· (수소 생산기술) 수전해, OCU 등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기술로의 전환 가속화 · (수소 저장기술) 다양한 수소 저장방식(액화·고체)에 화학적 저장(원자) 표준 확보 등 · (수소 운송기술) 효율적인 장기·단기 수소 운송기술 등 수소보급 고려		5. 스마트 유지관리	· (성능개선) 테스트베드, 실검 등 국토교통 성능개선 기술개발 중점 투자 · (유지관리) 첨단기술 활용 국토교통 시설물 자동화·무인화 유지관리 기술개발
	6. 수소 활용	· (수소연료전지 기반 시스템) 주거/산업 시스템 등 수소연료전지 활용 기술개발 강화 · (수소 충전인프라) 수소공급, 압축, 저장, 충전 등 안전 수소 인프라 구축 확대		6. 디지털 생산성 향상	· (디지털 전환) 설계·공사 등 국토교통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관련 기술개발 중점 투자 · (자동차·로보틱스) 자비용·고효율 자동차·로보틱스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
	7. 에너지 효율개선	· (탄소저감) 저탄소 건설재료, 저에너지 설계/시공기술 실증연구 등 · (건물 에너지 효율화)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물/도시 에너지 효율 사업 확대	SOC 건설/관리 효율화	7. 고효율 스마트 재료	· (건설재료 혁신) 친환경 및 융복합 신소재 등 스마트 기술 활용 건설재료 혁신 · (건설재료 효율화) SOC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고성능·고효율 건설재료 기술개발
저탄소 도시/건축	8. 그린 리모델링	· (에너지 효율 개선) 기존 노후 시설물 활용, 에너지 자립/효율개선 목적의 리모델링			
	9. 탄소중립도시	· (탄소중립 도시공간)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 에너지 인프라, 친환경 모빌리티 투자 강화 · (에너지 데이터플랫폼) 도시, 산업단지 기반 스마트 에너지 데이터 관리플랫폼 구축			
	10. 에너지 저장·활용	· (에너지 저장) 에너지 저장·활용 플랫폼 구축, 에너지 공급 인프라 투자 강화 · (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)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저장·활용 인프라 기술개발 및 실증			
친환경 플랜트	11. 에너지 플랜트 실증	· (에너지플랜트) 국산 플랜트 시스템 성능검증 등 플랜트 활용기술의 현지실증 확대 · (사업화 추진) 수요자 맞춤형 사업화 플랫폼 등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 추진			
	12. 미래형 신수요 대응	· (미래 신수요 대비) 우주, 차세대항공 등 미래신수요 대비 미래형공간건설 기술 확보 · (환경 적응성 검증) 테스트베드, 실증 등 신공간 인프라 건설기술 현장 적용성 검증			

* 자료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2025) 국토교통 R&D 투자전략

[Q3] 학교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, 한 학과에 2개 이상의 팀이 지원해도 무방한지요?

[A3] 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의 **최소 단위부서(학과)**에서는 1개 과제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(공고안내서 p.11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구성시 유의사항 참조).

[Q4] 연구개발계획서 Part1 1-2) 개발기술관련 표에 이미 연구진척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 작성하는 것인가요?

[A4] **개발/보유기술로** 작성하셔도 되고, 본 과제를 통해 **개발 예정인 기술에**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.

[Q5] 해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하게 되면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위탁연구비를 포함하여 기관부담금을 계산해야 하나요?

[A5] **위탁연구개발비를 포함해서 기관부담금을** 계상해주셔야 합니다.

[Q6] 동일기술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[A6] 본 사업 모든 신청기술은 KAIA에서 **전체 사업부서에서 중복성 검토를** 실시하고 **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** 등 **국가R&D 시스템을** 통해서도 **중복성 검토를** 실시할 예정입니다.

[Q7] 위탁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사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? (연구비를 매년 일괄 입금하는 방식인지)

[A7]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는 **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에 의해** 지급하고 사용합니다.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에 매년 지급되므로 위탁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Q8] 특허, 성과물 등 배분에 대한 사전 논의할 때 제한 사항은 없는지요?

[A8] 성과물 배분에 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은 없고, **가장 우선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%**를 가져가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.

[Q9] 해외기관도 "서식2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동의서"를 제출해야 하나요?

[A9] 해외기관은 **사업 참여의향서(LOI, MOU 등)**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(LOI 양식은 서식 참고8 참조, 레터 내용에 국내 주관기관(기관명 포함)과 협력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위탁연구개발책임자 소속기관의 대표(총장) 혹은 소속부서의 부서장(학과장, 대학장, 연구소장) 등 위탁연구개발책임자의 소속기관/부서의 상위직급자의 서명만 인정(위탁연구개발과제 책임자 당사자는 서명 불가))

[Q10] AI 기술은 필수인가요?

[A10] AI 기술은 필수로, 국토교통 분야에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는 글로벌 선진기술을 확보·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해주시면 됩니다.

[Q11] 해외 연구기관도 IRIS에 등록해야 하나요?

[A11] 해외 연구기관(위탁연구개발기관)은 IRIS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.

[Q12]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는 수요기관의 경우, 별도의 참여 의향서가 필요한가요?

[A12]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참여의향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[Q13] Part1 1-2) 개발기술관련 표에 등록번호 및 발급관청을 작성하게 되어있는데, 미정으로 두면 될까요?

[A13] 없을 경우 “해당없음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[Q14] 연구개발계획서에 해외기관 연구책임자 정보를 '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'에 작성하면 되는 것일까요?

[A14] 해외기관 연구책임자 정보는 Part1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서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에 작성하시면 되고 Part2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체계에 작성(Part2 서식 7쪽)하시면 되며 Part3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(Part3 서식 6쪽)에 작성하시면 됩니다.

[Q15] 연구개발계획서의 지적재산권 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꼭 있어야 하나요?

[A15] 지적재산권이 없는 경우 “해당없음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[Q16] 위탁연구비를 직접비의 40%로 배정하면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등이 직접비의 40%까지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, 전문가활용비 등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배정을 할 수 없는 걸까요?

[A16] 위탁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의 총합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의 40% 이내까지 편성 가능합니다.